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드합2248(본소) 이혼등
2013드합2255(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방AA (*****-2*****)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반소원고) 박BB (*****-1*****)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15. 5. 21.
판 결 선 고 2015. 7. 2.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 가. 111,000,000원을 지급하라.
 - 나. 원고(반소피고)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피고(반소원고)가 사망하기 전 날까지 피고(반소원고)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액 중 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3. 11. 8.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시 **면 **리 ****-* 전 119㎡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13. 7.부터 퇴직연금 중 매월 1/2 지분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115,312,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209,557,431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신분관계

원고와 피고는 1979. 11. 18.경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하다가 1982. 7.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 혼인관계파탄의 경위

가) 피고는 '**시스템'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 재직중인 이CC와 단둘이 모텔에 가는 등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 원고는 2012. 9.경 피고와 이CC가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 후로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수회에 걸쳐 두 사람이 모텔에 드나드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인 전DD과도 단둘이 모텔에 가는 등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와 전DD이 모텔에 드나드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2013. 6. 13.경에는 부산 ***구 **동에 있는 '**모텔'의 방 안에서 피고와 전DD이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전DD으로부터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6. 15.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3,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9, 갑 제28호증의 14, 16, 19, 21, 24 내지 2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 1) 본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1,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2) 본소 위자료 청구 : 50,000,000원 인정
- 3)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각 기각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CC, 전DD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고, 그 후에도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재산은닉, 피고에 대한 의심, 무시와 홀대, 사업방해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1, 2, 6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혼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위자료 액수 :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피고의 혼인 지속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피고는 1974.경부터 ***으로 근무하다가 2000. 3.경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매월 ***퇴직연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은 2000.경 1,143,190원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액되어 2014. 3. 현재는 월 1,922,040원이다.

한편 피고는 1996.경부터 2000.경까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체인 '**전산'을 운영하다가, 퇴직한 후에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관련 특허권도 취득하였는데, '**시스템'의 2013년도 자산 총계는 361,118,616원, 부채 총계는 324,919,754원, 자본 총계는 36,198,862원 (=자본금 5,697,165원+당기순이익 30,501,697원)이다.

2) 원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면서 부업으로 학원,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① 2005. 5. 25. 부산 **구 **동 ***-*** 외 5필지상 거제유림아시아드

아파트 ***동 ****호(이하 '거제유림아시아드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② 2006. 5. 3. 부산 **구 **동 ****-* 온천동반도보라스카이뷰 오피스텔 ****호(이하 '스카이뷰 오피스텔'이라고만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 7.경 대금 76,000,000원에 처분하였으며, ③ 2010. 7. 15. 부산 **구 **동 ****-* 미르코아빌딩 ***호(이하 '미르코아 상가'라고만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 6. 28.경 대금 180,000,000원에 처분하였다.

4) 피고는 2006. 11.경 **시 **면 **리 ****-* 전 119m²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피고의 아버지가 소유하다가 1975. 2. 19. 피고의 자형인 김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같은 리 ****-* 답 3,667m²와 인접한 토지이다.

5)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퇴직 전에는 피고의 급여와 원고가 부업으로 얻는 수입으로, 피고의 퇴직 후에는 피고가 '**시스템'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과 피고의 ***퇴직연금으로, 위와 같이 재산을 형성하고 가계를 꾸려나갔다.

[인정근거] 갑 제10, 11, 14, 60, 6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은행, (주)**은행에 대한 각 금융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동래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감정인 목FF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 별지1 분할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과 피고의 퇴직연금은 앞서 본 재산형성 경위와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중 수입 및 생활비 기여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

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 186,766,603원

나) 피고의 순재산 : 410,316,373원과 피고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

다)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 597,082,976원과 피고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

[인정근거] 갑 제10, 11, 20 내지 22, 25, 45 내지 48, 53, 58, 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을 제8,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중소기업중앙회, (주)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목FF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분할재산명세표 및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는 피고가 사업과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부업을 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피고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퇴직연금 관련), 원고와 피고의 향후 소득활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가) 별지1 분할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

분할대상 재산의 정의와 형태, 취득사유와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111,0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597,082,976원 × 50% = 298,541,488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298,541,488원 - 186,766,603원 = 111,774,885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111,000,000원

나) 퇴직연금 : ***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법원의 ***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사망하기 전 날까지 피고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액 중 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사망하기 전 날까지 피고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액 중 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이 사건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본소 및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김미진

 판사 박숙희